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영”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 ----- -----. |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 ③ (생략)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

| | |
|--|--|
|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의 25 이상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9.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 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p> | <p>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 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 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p> <p>④-----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 인 이 운영하는 경우</p> <p>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 · 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 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p> <p>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p> |
|--|--|

(다음 페이지에 계속)